



김해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528호 2022. 9. 8(목)

선 람	기 관 의 장

규 칙

- 제744호 김해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33490
- 제745호 김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33492
- 제746호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33494

고 시

- 제2022-238호 김해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고시 33498
- 제2022-243호 김해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궤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3501
- 제2022-245호 내동경운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2차 변경)·개발계획(3차 변경) 33503
수립·실시계획인가(1차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제2022-248호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700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33516

공 고

- 제2022-3834호 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33519
- 제2022-4049호 김해시 금고지정 공고 33521

제592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김해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홍태용

2022년 9월 8일

김해시 규칙 제744호

김해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김해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등)”을“(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퇴직공무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과”를“직무관련자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퇴직공무원”을“직무관련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퇴직공무원이 비용을 부담하는(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퇴직공무원이)”를“직무관련자가 비용을 부담하는(직무관련자가)”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2제3호 중“전가”를“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산하기관에”를“단체에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제4호 각 목의”로,“산하기관”을“단체”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23조제2항 본문 중“서면”을“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제11조제2항)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남,여)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남,여)	연락처	
	현 소속	직위(직책)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22.5.19.시행)에 따라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법제 운용의 혼선을 막고 자치법규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 (제6조 ~ 제11조, 제20조, 제25조)
-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제21조의2, 제23조)
 - 제9조(가족 채용 제한) 삭제로 '산하기관'의 정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제21조의2에 '산하기관'을 '단체'로 용어 변경함 (제21조의2)
 - 제23조에 '서면'의 정의를 추가함 (제23조)
- 용어의 개념 명확화 (제21조의2)
 - 제21조의2의 '전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가(轉嫁)'로 한자를 병행 표기함.

제592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김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홍태용

2022년 9월 8일

김해시 규칙 제745호

김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김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송사무”를 “소송사무,”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소송을”을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사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을 “소송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소송담당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주관부서”란 해당 소송내용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중 “법무담당관이 주관하되”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지휘·총괄하되”로, “본청 과·소의 장(이하 “소송담당과장”이라 한다)이 담당한다”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문서취급부서는”을 “문서취급부서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법무담당관”을 각각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소송담당과장”을 “소송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소송담당과장”을 “소송주관부서의 장”으로, “법무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무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담당관은 심사의뢰일로부터 5일 이내”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심사의뢰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소송담당과장”을 “소송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송담당과”를 “소송주관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소장”을 “소송주관부서의 장”으로, “법무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무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소송담당과장”을 각각 “소송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전단 중 “법무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송담당과·소”를 “소송주관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좌하며,”를 “도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송담당과장”을 “소송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송사건”을 각각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과·소의”를 “부서의”로, “과·소에 영향”을 “부서에 영향”으로, “과·소에 이”를 “부서의 장에게 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소에서는”을 “부서의 장은”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판결문 접수시 조치)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판결문을 접수 즉시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4조에 규정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중 “과·소분류”를 “부서의 분류”로, “법무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소송담당과장”을 “소송주관부서의 장”으로, “법무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소송담당과장”을 “소송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 “감사부서에”를 “감사부서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무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금전지급”을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소송비용의 청구)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종결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변제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건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 : 승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민사소송 : 승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시장 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 경우로 한정한다.)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26조 중 “법무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무담당관은 즉시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담당 과·소장”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즉시 해당사무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사무 부서의 장”으로, “법무담당관에게”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송담당과장”을 “소송주관부서의 장”으로, “검찰청의 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법무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업무처리 개선」 권고에 따른 규정을 개정하고 관계법령 개정과 현행사항 반영 및 소송업무처리부서 용어 일괄 정비를 통해 조직개편 등 행정 여건 변화에도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련 법령개정사항 현행화 정비 (제6조, 제15조, 제29조)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제24조)
 -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착수·처리 기한 설정
 - 소송비용 회수 예외사유 구체화
- 조직개편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처하여 원활한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일부 용어 정비 (제2조 ~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592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홍태용

2022년 9월 8일

김해시 규칙 제746호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인트 부여기준)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포인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즉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포인트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뺀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거나 뺄 때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거나 뺄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전화·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개인정보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인센티브 신청·지급 및 포인트 사용)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해시장에게 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센티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6월 말, 12월 말) 지급하고, 1인당 반기별 최고 지급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③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기준·방법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포인트 사용 기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개인정보수집 등 운영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시정 참여 활성화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공무원 노동자[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
3.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어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와 단속·감시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4. 김해시의회 의원
5.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 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민참여포인트 부여기준(제2조 관련)

부 여 대 상		부여포인트 (점)	비 고
분 야	내 용		
여론·설문조사	· 설문조사 참여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 참여)	1,000	
시정제안	· 채택 제안(심사·채택된 제안)	2,000	김해시 제안제 도운영조례에 의함
주민참여 예산	· 예산학교 수료	1,000	
	· 예산편성 의견제출	2,000	최종 예산 에 반영된 의 견(단순건의 제외)
시 단위행사	· 설명회, 공청회 등 참석	1,000	자체 계획에 의함
	· 시 행사 진행 및 보조	2,000	자체 계획에 의함
기 타	· 공익성 있는 시정 참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0~3,000	자체 계획에 의함

[별표 2]

인센티브 지급 및 포인트 사용 기준·방법 (제5조제3항 관련)

인센티브 지급 기준·방법	포인트 사용 기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만 포인트 이상 적립 시 김해사랑상품권 1만원권 지급 ○ 김해사랑상품권 1만원 단위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포인트 당 1원 상당 ○ 1만 포인트 이상 적립 시부터 사용 ○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포인트 적립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성별
누적포인트		사용포인트 (금회)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목적

신청자의 본인 확인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신청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상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2)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개정이유

-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시정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함.
- 시 정책 및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및 민-관 협력의 민주적·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유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참여포인트 부여기준을 규정함 (제2조)
- 포인트 신청 및 관리를 규정함 (제3조)
- 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을 규정함 (제4조)
- 인센티브 신청·지급 및 포인트 사용을 규정함 (제5조)
- 포인트 부여 제외를 규정함 (제6조)

김해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고시

「도로법」 제6조에 따라 김해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26.

김해시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수립 배경

- (목적)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김해시 도로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교통여건을 반영한 5년 단위의 “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
- (법적근거) 도로법 제6조

나.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2021년 ~ 2025년(장기 2030년)
- (공간적 범위) 김해시 행정구역 및 주변 교통영향권역
- (내용적 범위)
 - 도로교통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장래 여건 변화 및 교통수요 전망
 - 계획목표 및 방향 설정
 - 도로망 체계의 정비
 - 도로의 관리 및 도로자산의 활용·운용방안
 - 도로교통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
 -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관리 및 지역공동체 보전 방안
 - 도로의 경관 제고 방안 및 개별 도로건설 사업계획
 - 재원조달 방안

2. 기본방향 및 목표

가. 기본방향(비전)

- 사람·사회·경제·미래를 이어주는 다(多)연결 도로

나. 기본목표

- 부산·창원과 연결된 명실상부한 거점도시 도로망 구축



3. 도로건설·관리계획 주요내용

□ 부산·창원과 연결된 거점도시 도로망 구축

○ 뽀여나가는 도로망 구축

- 고속순환 도로망 구축 (3개소 L=38.8km)
- 외곽순환 도로망 구축 (6개소 L=79.8km)
- 광역도로망 구축 (2개소 L=8.2km)

○ 막힘없는 도로망 구축

- 광역연계도로 구축 (3개소 L=10.65km)
- 내부간선망 확충 (2개소 L=13.25km)
- 도시내 연결 도로망 개설 (21개소 L=62.53km)

□ 주요결절점(혼잡구간) 개선 : 8개소

□ 군도→시도 승격 : 16개 노선 L=140.4km

□ 연차별투자(2021~2030)계획 및 자원조달방안 수립

○ 진행중인사항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단기 투자계획(2024년까지) : 533,820백만원

● 중기 투자계획(2025~2030년) : 832,187백만원

● 장기 투자계획(2030년이후) : 837,338백만원

○ 자원조달 방안

● 국고보조사업발굴, 각종 개발사업 연계추진, 개발이익금활용, 민자투자 사업추진

※ 고시 전문은 우리시 누리집(<http://www.gimhae.go.kr>) 열린시정/알림마당/자료실(도로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해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궤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해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궤도)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해시청 도시계획과(☎ 055-330-3595)에 로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9월 8일

김 해 시 장

1. 김해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궤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1	궤도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986번지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산1-4번지	-	453 (편도)	4,538	-	B=8.5m, 유원지1-3, 소로2-588호선과 일부 중복결정

○ 궤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궤도	■ 궤도 신설 - L : 453m(편도) - B : 8.5m - A : 4,538㎡	■ 김해천문대 및 가야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시민, 관광객 및 노약자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신 교통수단인 모노레일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 궤도)을 결정(신설)하고자 함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588	9.5~19	보조 간선 도로	2,420	대 3-6	9호 광장	일반 도로	-	김해시 고시 제2009-15호 (2009.3.5.)	궤도① 일부구간 중복결정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소로 2-588	소로 2-5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구간 중복결정 - L : 11m - A : 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노레일 설치[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 궤도)]로 인해 궤도 노선 중 일부 구간이 소로2-588호선에 일부 중복되어 이에 대해 중복결정 함

나. 공간시설

○ 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3	유원지	김해시 어방동 986 일원	182,050	-	182,050	김해시 고시 제2014-79호 (2014.4.10.)	궤도① 일부구간 중복결정

○ 유원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3	유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중복결정 - A : 5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노레일 설치[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 궤도)]로 인한 유원지 내 하부승강장에 대해 일부 중복결정 함

2. 김해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궤도) 결정(변경) 관련 도면 : 게재생략

김해시 고시 제2022-245호

내동경운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2차 변경) · 개발계획(3차 변경) 수립 · 실시계획인가(1차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시 고시 제2020-156호(2020.5.2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었고, 김해시 고시 제2021-254호(2021.7.9.)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김해시 고시 제2022-78호(2022.3.25.)로 구역지정(변경) ·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김해시 고시 제2022-108호(2022.4.22.)로 정정고시된 내동경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김해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8일

김해시장

1.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내동경운지구 도시개발구역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243-1번지 일원
- 면적 : 28,230㎡ → 28,334㎡ 증)104㎡

※변경사유 : 도시개발구역 경계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구역계 변경없음)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
- 기 훼손 녹지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이용성 제고
-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확보를 통한 김해시 주택공급정책에 기여

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주)한일자동차학원 대표이사 김덕복
- 주 소 : 김해시 분성로3번길 235-34(내동)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 :
 - 기 정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2020.5.29.) ~ 공사완료공고일(2022.12.31.)
 - 변 경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2020.5.29.) ~ 공사완료공고일(2023.12.31.)
-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바.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계	28,230	증)104	28,334	100.0	100.0	
주거용지	22,266	-	22,266	78.9	78.6	
공동주택용지	22,266	-	22,266	78.9	78.6	
기반시설용지	5,964	증)104	6,068	21.1	21.4	
주차장	384	-	384	1.4	1.4	
저류시설	773	-	773	2.7	2.7	
공원	3,000	-	3,000	10.6	10.6	
도로	1,807	증)104	1,911	6.4	6.7	

2)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기정	1	198	1,807	-	-	-	1	198	1,807	-	-	-
	변경	1	198	1,911	-	-	-	1	198	1,911	-	-	-
대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중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소로	기정	1	198	1,807	-	-	-	1	198	1,807	-	-	-
	변경	1	198	1,911	-	-	-	1	198	1,911	-	-	-

- 도로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	9	국지도로	198	중로3-1	내동244-2	일반도로	-	2020. 5.29.	
변경	소로	2	1	9	국지도로	198	중로3-1	내동244-2	일반도로	-	2020. 5.29.	면적 변경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	소로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면적 변경 - 위치 : 내동 243 - 1 일원 - 면적 : 1,807m²→1,911m² 증)104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개발구역 경계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시설 경계 변경없음)

(2)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내동 244-1번지 일원	384	-	384	2020. 5.29.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원	내동 243-4번지 일원	3,000	-	3,000	2020. 5.29.	

다) 방재시설(변경없음)

(1) 저류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저류시설	내동 243-3번지 일원	773	-	773	2020. 5.29.	

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1

아.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
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자. 법 제11조 제8항 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기간 (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2020.5.29.)로부터 3년간

차.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1)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11	내동경운지구 도시개발구역	내동 243-1번지 일원	28,230	증)104	28,334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88	내동경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동 243-1번지 일원	28,230	증)104	28,334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88	내동경운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면적 조정 - 위치 : 내동 243-1 일원 - 면적 : 28,230㎡→28,334㎡ 증)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개발구역 경계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구역계 변경없음)

카.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김해시 도시개발과(전화 : 055-330-670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내동경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내동경운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
- 기 훼손 녹지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이용성 제고
-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확보를 통한 김해시 주택공급정책에 기여

다.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243-1번지 일원
- 면적 : 27,700㎡ → 28,334㎡ 증)634㎡

라. 시행자(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주)한일자동차학원 대표이사 김덕복
- 주 소 : 김해시 분성로3번길 235-34(내동)

마. 시행기간(변경)

- 기정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2020.5.29.) ~ 공사완료공고일(2022.12.31.)
- 변경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2020.5.29.) ~ 공사완료공고일(2023.12.31.)

바. 시행방식(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 붙임2

아.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인가일로 부터 14일 이상
- 공람장소 : 김해시청(도시개발과)

자.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3. 지형도면 고시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등

- 내동경운지구 도시개발구역

나. 지역·지구 등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243-1번지 일원
- 면적 : 28,334㎡

다. 지역·지구 등의 지정 고시 예정일

- 2022. 9. 8.

라. 지역·지구 등의 효력 발생 예정일

- 2022. 9. 8.

마. 지형도면 등 관련자료 열람방법

- 지형도면 등 이와 관련된 관계도서는 김해시 도시개발과(☎055-330-67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도 지형도면 열람이 가능함

바.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게재 생략

4. 관련도면 : 게재 생략

- 붙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변경) 1부.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1부.

<붙임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변경)

일련 번호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권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기정		59,399	28,230							
			변경		28,334	28,334							
1	기정	김해시 내 동	213	잡	985	985		주식회사 *****	김해시 분성로3번길 235-***(내동)	주식회사 ****	부산광역시 동구 법일로 **(법일동)	지상권, 근저당권	
2	기정	김해시 내 동	213-2	잡	426	426		주식회사 *****	김해시 분성로3번길 235-***(내동)	주식회사 ****	부산광역시 동구 법일로 **(법일동)	지상권, 근저당권	
3	기정	김해시 내 동	219	잡	85	85		주식회사 *****	김해시 분성로3번길 235-***(내동)	주식회사 ****	부산광역시 동구 법일로 **(법일동)	지상권, 근저당권	
4	기정	김해시 내 동	220	전	951	951		문**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168번길 7, 506동 ****호(삼계동, 화정마을부영아파트)	**** 협동조합	김해시 부원동 ***	지상권, 근저당권	
5	기정	김해시 내 동	220-2	잡	147	147		주식회사 *****	김해시 분성로3번길 235-***(내동)	주식회사 ****	부산광역시 동구 법일로 **(법일동)	지상권, 근저당권	
6	기정	김해시 내 동	221	전	495	495		문**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168번길 7, 506동 ****호(삼계동, 화정마을부영아파트)	**** 협동조합	김해시 부원동 ***	지상권, 근저당권	
7	기정	김해시 내 동	221-3	잡	251	251		주식회사 *****	김해시 분성로3번길 235-***(내동)	주식회사 ****	부산광역시 동구 법일로 **(법일동)	지상권, 근저당권	
8	기정	김해시 내 동	222	묘	10	10		김**	부산 남구 대연동 1503-***				
9	기정	김해시 내 동	224-2	전	212	212		문**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168번길 7, 506동 ****호(삼계동, 화정마을부영아파트)				
10	기정	김해시 내 동	225	도	2,757	60		김**					
	변경	김해시 내 동	225-7	도	60	60		김**					
11	기정	김해시 내 동	237	전	50	50		김**	김해시 해반천로168번길 7, 503동 ****호(삼계동, 화정마을부영아파트)	**** 협동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봉림로 **	지상권, 근저당권	
12	기정	김해시 내 동	239	전	1,524	1,524		문**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168번길 7, 506동 ****호(삼계동, 화정마을부영아파트)	**** 협동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봉림로 **	지상권, 근저당권	
13	기정	김해시 내 동	240	묘	284	284		김**	김해시 해반천로168번길 7, 503동 ****호(삼계동, 화정마을부영아파트)	**** 협동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봉림로 **	지상권, 근저당권	
14	기정	김해시 내 동	241	전	1,650	1,650		문**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168번길 7, 506동 ****호(삼계동, 화정마을부영아파트)	**** 협동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봉림로 **	지상권, 근저당권	
15	기정	김해시 내 동	242	묘	152	152		미등기		김**	삼정동		토지대장 소유자 표기
16	기정	김해시 내 동	243	답	1,405	1,405		문**	대천 서구 둔산북로160, 110동 ***호(둔산동, 한마루아파트)	**** 협동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봉림로 **	지상권, 근저당권	
17	기정	김해시 내 동	243-1	대	9,945	9,945		주식회사 *****	김해시 분성로3번길 235-***(내동)	주식회사 ****	부산광역시 동구 법일로 **(법일동)	지상권, 근저당권	
18	기정	김해시 내 동	243-2	잡	389	389		주식회사 *****	김해시 분성로3번길 235-***(내동)	주식회사 ****	부산광역시 동구 법일로 **(법일동)	지상권, 근저당권	
19	기정	김해시 내 동	243-3	잡	255	255		주식회사 *****	김해시 분성로3번길 235-***(내동)	주식회사 ****	부산광역시 동구 법일로 **(법일동)	지상권, 근저당권	
20	기정	김해시 내 동	243-4	잡	806	806		주식회사 *****	김해시 분성로3번길 235-***(내동)	주식회사 ****	부산광역시 동구 법일로 **(법일동)	지상권, 근저당권	

일련 번호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공유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권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1	기정	김해시 내 동	243-5	잡	653	653		주식회사 *****	김해시 분성로3번길 235-**(내동)				
22	기정	김해시 내 동	243-6	잡	1,937	1,937		주식회사 *****	김해시 분성로3번길 235-**(내동)	주식회사 ****	부산광역시 동구 법일로 **(법일동)	저상권, 근저당권	
23	기정	김해시 내 동	244-1	담	663	663		박**	김해시 내동 ***				
24	기정	김해시 내 동	244-2	전	295	292		박**	김해시 내동 ***				
	변경	김해시 내 동	244-2	전	292	292		박**	김해시 내동 ***				
25	기정	김해시 내 동	245-1	도	169	5		김**					
	변경	김해시 내 동	245-3	도	5	5		김**					
26	기정	김해시 내 동	산2-1	구	65	39		국(****)					
	변경	김해시 내 동	산2-1	구	61	61		국(****)					
27	기정	김해시 내 동	산2-2	임	18,658	3,509		문**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168번길 7, 506동 ****호(삼계동, 화정마을부영아파트)				
	변경	김해시 내 동	산2-17	임	3,589	3,589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지동*가, 대신파이낸스센터)				
28	기정	김해시 내 동	산2-6	임	9,910	102	1/2	전**	김해시 내동 ***				
						1/2	전**	김해시 내동 ***					
	변경	김해시 내 동	산2-16	임	102	102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지동*가, 대신파이낸스센터)				
29	기정	김해시 내 동	산2-9	임	336	336		김**	김해시 해반천로168번길 7, 503동 ****호(삼계동, 화정마을부영아파트)				
30	기정	김해시 내 동	산7	임	3,286	82		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155번길 60, ***호(반여동, 함양빌라)	****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통일로 ****(충정로가 (엔케이저금융플리스센터사티렌다)	근저당권	
	변경	김해시 내 동	산7-2	임	85	85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지동*가, 대신파이낸스센터)				
31	기정	김해시 내 동	245	대	324	266		윤**	김해시 구지로135번길 33, ***호(구산동)				
	변경	김해시 내 동	245	대	266	266		윤**	김해시 구지로135번길 33, ***호(구산동)				
32	기정	김해시 내 동	245-2	대	324	264		주식회사 *****	김해시 분성로3번길 235-**(내동)				
	변경	김해시 내 동	245-2	대	263	263		주식회사 *****	김해시 분성로3번길 235-**(내동)				

<붙임2>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463,329,091.0	-	463,329,091.0	100.0	
주거지역	계	37,613,729.5	증)634	37,614,363.5	8.1	
	제2종일반주거	71,538.0	-	71,538.0	0.0	
	제1종일반주거	11,998,509.0	-	11,998,509.0	2.6	
	제2종일반주거	15,751,680.5	증)634	15,752,314.5	3.4	
	제3종일반주거	6,902,592.2	-	6,902,592.2	1.5	
	준주거지역	2,889,409.8	-	2,889,409.8	0.6	
상업지역	계	4,095,144.1	-	4,095,144.1	0.9	
	중심상업지역	365,880.0	-	365,880.0	0.1	
	일반상업지역	3,472,385.2	-	3,472,385.2	0.7	
	근린상업지역	216,514.9	-	216,514.9	0.0	
	유통상업지역	40,364.0	-	40,364.0	0.0	
공업지역	계	17,522,329.8	-	17,522,329.8	3.8	
	일반공업지역	13,604,800.5	-	13,604,800.5	2.9	
	준공업지역	3,917,529.3	-	3,917,529.3	0.8	
녹지지역	계	207,653,899.5	감)634	207,653,265.5	44.8	
	보전녹지지역	7,314,583.0	-	7,314,583.0	1.6	
	생산녹지지역	6,764,768.5	-	6,764,768.5	1.5	
	자연녹지지역	193,574,548.0	감)634	193,573,914.0	41.8	
관리지역	계	102,454,773.6	-	102,454,773.6	22.1	
	관리지역	3,709,971.0	-	3,709,971.0	0.8	
	보전관리지역	42,208,163.5	-	42,208,163.5	9.1	
	생산관리지역	18,426,509.7	-	18,426,509.7	4.0	
	계획관리지역	38,110,129.4	-	38,110,129.4	8.2	
농림지역		93,815,166.5	-	93,815,166.5	20.2	
도시지역(미세분)		174,048.0	-	174,048.0	0.0	

주) 기정 : 내동경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1-254호, 2021.7.9.)

나. 용도지역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m ²)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1	김해시 내동 243-1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05	지구단위 계획에 따름	도시개발구역 경계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구역계 변경없음)
2	김해시 내동 245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529	지구단위 계획에 따름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변경)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88	내동경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김해시 내동 243-1번지 일원	28,230	증)104	28,334	김해시 고시 제2020-156호 (2020.5.29.)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 계	기정	1	198	1,807	-	-	-	1	198	1,807	-	-	-
	변경	1	198	1,911	-	-	-	1	198	1,911	-	-	-
대 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중 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소 로	기정	1	198	1,807	-	-	-	1	198	1,807	-	-	-
	변경	1	198	1,911	-	-	-	1	198	1,911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702	9	국지 도로	198	중로3-1	내동 244-2	일반 도로	-	2021. 7.9.	개발계획상 소로2-1
변경	소로	2	702	9	국지 도로	198	중로3-1	내동 244-2	일반 도로	-	2021. 7.9.	면적변경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류 702호선	소로2류 702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변경 - 연장 : 198m - 폭원 : 9m - 면적 : 1,807㎡ → 1,911㎡ 증)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분할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시설 경계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170	주차장	내동 244-1번지 일원	384	-	384	김해시 고시 제2021-254호 (2021.7.9.)	개발계획상 주차장(1)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190	공원	어린이 공원	내동 243-4번지 일원	3,000	-	3,000	김해시 고시 제2021-254호 (2021.7.9.)	개발계획상 공원(1)

다) 방재시설(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16	유수지	저류시설	내동 243-3번지 일원	773	-	773	김해시 고시 제2021-254호 (2021.7.9.)	개발계획상 저류시설(1)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번호(위치)	면 적(m ²)	번호(위치)	면 적(m ²)	
-	IBL	25,893	26,423	1	21,736	1	22,266	공동주택용지
				2	773	2	773	저류시설
				3	3,000	3	3,000	공 원
				4	384	4	384	주 차 장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내 용	
-	IBL-1	용도	지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익시설로서 '주택법'제2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20% 이하	
		높 이	○ 20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은 주변의 시각 통로 확보가 되고, 바람 통로가 형성되도록 배치를 권장	
		형 태	○ 공동주택의 지붕 및 옥상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디자인화된 형태로 조성하며, 평지붕 계획시 옥상녹화 등 조경공간으로 조성되도록 권장 ○ 공동주택단지의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가능한 한가지로 통일시키도록 하며 외부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조성 ○ 공동주택 외부에 실외기, 안테나 등 설비의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함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김해시 기본경관계획」의 용도별 색채계획을 반영	
			○ 건축물은 쾌적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색채 배색을 지향하고, 고명도, 저채도의 색채를 중심으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이미지 배색을 권장	
			○ 시각적 규모와 위압감을 주는 저명도, 고채도 색채사용을 지양하고, 건축물의 색채 계획은 다음표를 따른다.	
색상계열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YR계열	명도8~9/채도1~3		명도5~8/채도2~6	명도2~5/채도2~6
Y계열	명도8~9/채도1~3		명도5~8/채도2~6	명도2~5/채도2~6
GY계열	명도8~9/채도1~2	명도5~8/채도1~5	명도2~5/채도2~6	
G계열	명도8~9/채도1~2	명도5~7/채도1~4	명도2~5/채도2~5	
BG계열	명도8~9/채도1~2	명도5~7/채도1~4	명도2~5/채도2~5	
RP계열	명도8~9/채도1~2	명도6~8/채도1~5	명도2~5/채도2~6	
건축선	○ 공동주택용지 남서측 구간은 건축선 폭 10m 적용(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그 외 지역의 건축선은 관계법령에 따름			

○ 주차장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1BL-4	용도	기정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단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및 종류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름	
			변경	○ 「건축법」 제11조, 제14조에 따른 건축물 건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관련법령(주차장법)에 따름
				용적률	○ 관련법령(주차장법)에 따름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	공동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 내 계획 주차대수는 세대당 1.3대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 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

1) 조성계획 총괄표

가) 총괄표(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면적	3,000	-	3,000		
시설면적계	1,697	증)32	1,729	기정)시설율 : 56.6% 변경)시설율 : 57.6%	
건축면적	바닥면적	-	증)21.24	21.24	건폐율 : 0.7%
	연면적	-	증)21.24	21.24	용적율 : 0.7%

나) 토지이용계획표 (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3,000	-	3,000	
도로및광장	685	증)30	715	
조경시설	345	감)20	325	
휴양시설	186	-	186	
유희시설	481	-	481	
편익시설	-	증)22	22	
녹지	1,303	감)32	1,271	

2) 세부시설조사

가) 도로 및 광장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685	-	-	-	
변경		소	계	715	-	-	-	
기정	1	도로	-	536	-	-	-	
변경	1	도로	-	566	-	-	-	
기정	2	그늘광장	-	149	-	-	-	

나) 조경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345	-	-	-	
변경		소	계	325	-	-	-	
기정	3	락가든	-	345	-	-	-	
변경	3	락가든	-	325	-	-	-	

다) 휴양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186	-	-	-	
기정	4	초록쉼터	-	109	-	-	-	
기정	5	어귀쉼터	-	77	-	-	-	

라) 유희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481	-	-	-	
기정	6	짚라인	-	228	-	-	-	
기정	7	언덕놀이터	-	253	-	-	-	

마) 편의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신설		소	계	22	21.24	21.24	-	
신설	8	화장실	-	22	21.24	21.24	-	

바) 녹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1,303	-	-	-	
변경	소 계			1,271	-	-	-	
기정	녹지		-	1,303	-	-	-	
변경	녹지		-	1,271	-	-	-	

3) 도로조서 총괄표(변경)

구 분		폭원	합 계		소 로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	181	536	181	536
합계	변경	-	195	566	195	566
3류	기정	-	181	536	181	536
3류	변경	-	195	566	195	566

4) 세부도로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사용형태	연장(m)	면적(㎡)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합 계				-	181	536			
변경	합 계				-	195	566			
기정	소로	3	1	3~3.5	진입로	49	152	동측구역계	그늘광장	
기정	소로	3	2	3	연결로	7	21	어귀쉼터	소로3-1	
기정	소로	3	3	2.5~3	산책로	120	353	그늘광장	그늘광장	
변경	소로	3	3	2.5~3	산책로	120	352	그늘광장	그늘광장	
기정	소로	3	4	2	진입로	5	10	동측구역계	어귀쉼터	
신설	소로	3	5	2	진입로	14	31	어귀쉼터	서측구역계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700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700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8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70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700호선)사업
 - 사업의 명칭 : 김해 외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진입도로 개설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구분	시설명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비고
		길이(m)	폭원(m)	길이(m)	폭원(m)	면적(㎡)	
기정	소로2-700호선	652	8~10	310	8~10	4,141.1	김해시 고시 제2020-313호 (2020.10.23.)
변경	소로2-700호선	652	8~10	332	8~10	4,228.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외동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1193번길 12-1, 2층(외동)
5. 사업기간 : 2022. 7. 8. ~ 2025. 7. 7.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붙임
7.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사유
 - 시행노선 연장 오류 수정 및 도로 사면부 추가 편입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T.055-330-3594)에 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 종류 및 내용	
					도로부	사면부						
1	외동	877-5	임	2,153	55	30	(경상남도)					기정
1	외동	877-5	임	2,153	55	30	(경상남도)					변경
2	외동	763-2	도	588.9	92.5	-	(김해시)					기정
2	외동	763-2	도	588.9	92.5	-	(김해시)					변경
3	외동	763	도	421.4	26.0	-	(김해시)					기정
3	외동	763	도	421.4	26.0	-	(김해시)					변경
4	외동	705	대	51,477.3	69.5	-	외동주공 아파트					기정
4	외동	705	대	51,477.3	69.5	-	외동주공 아파트					변경
5	외동	877-3	전	57	35	9	김*규	김해시 외동 000 000000아파트 000동 000호				기정
5	외동	877-3	전	57	35	9	김*규	김해시 외동 000 000000아파트 000동 000호				변경
6	외동	산36	임	5,491	362	72	김*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0, 000-000				기정
6	외동	산36	임	5,491	362	72	김*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0, 000-000				변경
7	외동	868	대	187	100	-	노*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로00번길 00-00, 000호				기정
7	외동	868	대	187	100	87	노*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로00번길 00-00, 000호				변경
8	외동	763-1	도	1,444.1	1,444.1	-	(김해시)					기정
8	외동	763-1	도	1,444.1	1,444.1	-	(김해시)					변경
9	외동	864	대	45	35	10	박*옥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000				기정
9	외동	864	대	45	35	10	박*옥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000				변경
10	외동	858-3	전	44	34	8	박*옥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000				기정
10	외동	858-3	전	44	34	8	박*옥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000				변경
11	외동	858-2	전	757	33	47	박*옥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000				기정
11	외동	858-2	전	757	33	47	박*옥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000				변경
12	외동	858-1	전	76	55	15	박*옥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000				기정
12	외동	858-1	전	76	55	15	박*옥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000				변경
13	외동	산37	임	6,855	63	72	박*옥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000				기정
							주식회사 케***레	부산시 북구 기찰로 000 (덕천동)				
13	외동	산37	임	6,855	63	72	박*옥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000				변경
							주식회사 케***레	부산시 북구 기찰로 000 (덕천동)				

공 고

김해시 공인조례 제7조(재등록 및 폐기) 제10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김 해 시 장



1. 공인 등록일자 : 2022. 8. 25.

2. 재등록 공인내역 : 1개

공 인 명	제 품 명 (모델/형식)	규격 (cm)	재료	서 체	등록사유	관리부서
민 원 사 무 김 해 인 시 장 인 철 산 서 부 동 전 용	통합증명발급기 (TA-2200S/형)	2.6×2.6	합성 고무	훈 민 정음체	통합증명 발급기 공인 마모에 따른 교체	철산서부동

3. 폐기 공인내역 : 1개

공 인 명	제 품 명 (모델/형식)	규격 (cm)	재료	서 체	등록사유	관리부서
민 원 사 무 김 해 인 시 장 인 철 산 서 부 동 전 용	통합증명발급기 (TA-2200S/형)	2.6×2.6	합성 고무	훈 민 정음체	통합증명 발급기 공인 마모에 따른 교체	철산서부동

4. 재등록 인영부 : 1개

구분	공 인 명	제 품 명 (모델/형식)	규격 (cm)	재료	서체	인 영
재등록	민 원 사 무 김 해 시 장 인 칠산서부동전용	통 합 증 명 발 급 기 (T A - 2 2 0 0 S / 형)	2.6×2.6	합성 고무	훈 민 정음체	

5. 폐기 인영부 : 1개

구분	공 인 명	제 품 명 (모델/형식)	규격 (cm)	재료	서체	인 영
폐기	민 원 사 무 김 해 시 장 인 칠산서부동전용	통 합 증 명 발 급 기 (T A - 2 2 0 0 S / 형)	2.6×2.6	합성 고무	훈 민 정음체	

김해시 금고지정 공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2항 및 「김해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6조 제6항과 제7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금고)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인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김 해 시 장

1. 약정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간)

2. 지정내역

금고구분	금융기관명	취급회계 및 기금
제1금고	농협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1) ○ 기타특별회계(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조성,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 기금(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진흥, 농어촌발전, 재난관리 옥외광고물정비
제2금고	경남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특별회계(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 기타특별회계(7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개선, 기반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 지하수관리, 도시철도사업,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농공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 기금(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 중소기업육성, 양성평등, 김해시남북교류협력, 통합재정안정화

3.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순 위	금융기관명	총 점	비 고
1순위	농협은행	890.35	
2순위	경남은행	844.40	